

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5월 2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숲속의집 증축에 따른 통합적 관리·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책정 및 사용료 감면기준 보완을 위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

3. 주요골자

- 휴양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면기준을 규정함.(안 제8조)
-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신설함.(안 제10조)
- 숲속의집 증축 등 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[별표 1] 시설사용 요금 표의 금액 등을 변경함.
- [별표 2]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의 감면율 등을 변경함.
- 그 외 오기입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구를 수정함.

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산림녹지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496, FAX : (043)731-9011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-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시설물은 숲속의 집, 산림문화휴양관(숙소동), 숲속수련장으로 한정한다.

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19세 미만의 장애인 미성년자 예약자가 야영 및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며, 보호자 동반 없이 야영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자연휴양림”을 “휴양림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자연 휴양림”을 “휴양림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자연휴양림”을 각각 “휴양림”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사용 요금표(제7조제1항 관련)

1-1. 숙박시설 및 상품권 지급

(단위: 원)

시설명	구분	사용기준	금액		비고
			비수기	성수기	
숲속의집	24.1㎡ (4인)	1실/1일	55,000	70,000	
	43㎡ (6인)		60,000	85,000	
	50㎡ (8인)		85,000	110,000	
	110㎡ (15인)		145,000	190,000	
	100㎡ (20인)		200,000	245,000	
	132㎡ (25인)		250,000	300,000	
	192.48㎡ (30인)		300,000	400,000	
산림문화휴양관	23.4㎡ (4인)	1실/1일	50,000	70,000	
	35.1㎡ (6인)		70,000	100,000	
	47.5㎡ (8인)		90,000	140,000	
	46.8㎡(6인특실)		100,000	160,000	
	52.6㎡(4인특실)		150,000	180,000	
숲속수련장	298.48㎡	4실/1일	360,000	480,000	식당, 세미나실 포함
지역상품권 환원	사용료 100천원 이하	1실	5,000원 옥천군 지역상품권 1매 지급		※ 숙박시설 사용에 따른 지역상품권 지급 ※ 시설 예약자 지급
	사용료 100천원 초과		5,000원 옥천군 지역상품권 1매 추가 지급 (사용료100천원 증가될 때마다 1매 추가)		

1-2.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

(단위: 원)

시설명	구분	사용기준	금액		비고
			비수기	성수기	
대회의실	359.55㎡	4시간	200,000	300,000	※기준초과 1시간당 30천원 추가 징수
1,2다목적실	67.6㎡	4시간	150,000	200,000	※기준초과 1시간당 20천원 추가 징수
1강의실	53.25㎡	4시간	150,000	200,000	
2강의실	39.5㎡	4시간	100,000	150,000	※기준초과 1시간당 15천원 추가 징수

1-3. 체험시설

(단위: 원)

시설명	구분	사용기준	금액		비고
			비수기	성수기	
열치유실	1실	1시간	- 대인(만 13세 이상): 5,000 (옥천군민: 3,000)		※ 영유아 무료 (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)
물치유실	1실	1시간	- 소인(만 12세 이하): 3,000 (옥천군민: 1,000)		

1-4. 기타시설

(단위: 원)

시설명	구분	사용기준	금액		비고
			비수기	성수기	
단체식당	118.44㎡	1일	200,000	200,000	※ 사용시간 : - 9:00~ 21:00
전용데크	360㎡	1시간당	50,000	50,000	※ 사용시간 : - 9:00~ 21:00
야외음악당	1개소	4시간이내	80,000	120,000	※ 사용시간 : - 9:00~ 21:00
		4시간이상	100,000	150,000	
정자·데크	1개	1일	10,000	20,000	※ 성수기금액 적용기간 - 4. 1. ~ 10. 31.
파라솔	1개	1일	5,000	10,000	
천막	1동	1일	5,000		※ 본인지참
텐트(타프포함)	1개	1일	4,000		※ 본인지참
주차장	경차(1,000cc이하)	1대/1일	1,000		
	소형(15인승이하)		3,000		
	대형		10,000		

[별표 2]

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(제8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/ 일수	입 증 서 류	비 고
다자녀(옥천군)	50% / 3일	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	※ 다자녀 - 미성년자 3자녀 이상
다자녀	50% / 1일		
국가유공자	30% / 1일	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유족증	
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	30% / 1일	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증	
업무협약	30% / 제한없음	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,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위임장	
장애인	30% / 1일	장애인등록증	※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) 대상
군민	30% / 제한없음	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	※ 비수기 한정
주차료 면제	제한없음	해당 증명서류	※ 군민 7~8월 제외

※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8조 관련

※ 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중복 적용 불가

- 사용료 감면 혜택은 예약 당사자에게 지급

※ 감면 적용 시 입증서류 제출

※ **주차료 면제 대상자:** 옥천군민,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,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, 장애인(등급제한 없음), 숙박시설 이용자, 공무수행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설사용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7조(시설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8조(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) ⑥ <u>별표 2</u>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시설물은 <u>숲속의 집, 산림문화휴양관, 숲속수련장, 대회의실, 다목적실, 강의실, 단체식당, 전용데크, 야외음악당으로 정한다</u>.</p>	<p>제8조(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) ⑥ <u>별표 2의</u>----- -----<u>산림문화휴양관(숙소동), 숲속수련장으로 한정한다</u>.</p>
<p>제10조(시설물의 예약 및 해약 등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시설물의 예약 및 해약 등)</p> <p>⑥ <u>19세 미만의 장애인 미성년자 예약자가 야영 및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며, 보호자 동반 없이 야영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</u>.</p>
<p>제13조(위탁관리) ----- -----</p>	<p>제13조(위탁관리) ----- -----</p>

----- 자 연 휴양림 -----

-----.

제14조(요금표의 게시) 자연 휴양림

-----.

제15조(세입세출 등) ① (생 략)

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.

----- 휴양림 -----

-----.

제14조(요금표의 게시) 휴양림

-----.

제15조(세입세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휴양림

-----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 례 명 :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